

2024년 제7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8 월 19 일

여 수 시 장

2024. 8. 19



여수시 규칙 제845호

붙임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45호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면허신청 거주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면허신청 거주요건) 사업구역 내 지리숙지를 위하여 면허신청자는 면허신청 공고일, 양수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거나 사업 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면허신청 거주요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양수, 대리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